

< 실물증권 제출 방법 및 서류안내 >

8월 21일(수)까지 가까운 증권회사에 내점하여 실물증권을 입고하지 않으신 경우,
9월 11일(수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방하여 실물증권 등을 제출하고
 거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하여야합니다.

한국예탁결제원 내방 시 필요서류(8.22~9.11)

• **개 인**

주주 본인이 직접 내방하는 경우	대리인이 내방하는 경우
<input type="checkbox"/>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증권회사 계좌(주주 본인명의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물증권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증권회사 계좌(주주 본인명의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물증권

• **법 인**

법인의 대리인이 내방하는 경우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등록증 <input type="checkbox"/> 증권회사 계좌(법인 명의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리인 신분증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인감도장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인감증명서 <input type="checkbox"/> 실물증권

(문의전화) 한국예탁결제원 ☎ 02)3774-3000

※ 증권회사 내방 시 필요서류는 해당 증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